

(2026년) 안전·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기업 공모

1

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의 사업장내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여 위험요소 감소 및 사업경쟁력 강화하기 위함

2

사업개요

- 주관 : 물류산업진흥재단
- 대상
 - 국내 중소기업 [【붙임 1】중소물류기업\(인\) 기준 참조](#)
 - 개선이 필요한 현장이 자가 소유이거나, 임대 시설일 경우 잔존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남은 시설
(* 잔존계약기간이 임대 2년 미만의 경우 계약연장동의서 제출 시 신청가능)

■ 지원 범위

지원대상 사례	· 휴게공간 : 직원 휴게실, 화물차 운전자 휴게실 등 직원복지관련
	· 안전시설 : 사업장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, 안전상 개선이 필요한 시설중 재단의 내부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
	· 기타 안전/환경개선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
지원제외 사례	· 생산설비시설
	· 유희시설
	· 사무시설 및 집기비품
	· 전자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
	· 기타 개선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※ 사진참고 : 별도 첨부파일 '환경개선지원사업 기업 지원사례'

- 신청서 접수 기간 : 2026년 상시모집
 - * 모집상황에 따라 신청 조기마감 또는 수시 및 추가 모집 발생할 수 있음
- 개선사업 기간 : 2026년 3월~10월中
 - * 3자(재단/수혜기업/시공업체)간 협의를 통해 기간 및 공사일수 최종 결정

■ 비용

- 시공비용은 재단과 수혜업체간 협의된 견적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, 견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추가로 시공이 필요할 경우 수혜기업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은 수혜업체에서 부담함
- 선정된 시공업체의 현장진단, 수혜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공범위 및 규모를 결정

■ 규모 : 00개 기업

3

사업 수행 절차



4

심사 기준

■ 1차 서류심사

- 국내 중소기업 여부 확인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대기업)에 속하지 않은 기업
- 개선이 필요한 현장이 자가 소유이거나, 임대 시설일 경우 잔존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남은 시설 (* 잔존계약기간이 임대 2년 미만의 경우 계약연장동의서 제출)
- 필수서류 제출 확인
- 해당 사업 목적(안전/환경 개선)에 적합여부 확인
- 신청기업 임직원의 재단 사업 참여도 평가

■ 2차 현장심사 (세부 심사 항목 평가를 통한 정성·정량적 평가)

- 회사소개 및 지원사유 등 발표
- 제출자료 사실 확인

- 재단의 지원범위 내 사업 시행 가능성 여부 판단 등
 - * 회사 대표 참석 (단, 대표 참석 불가 시 임원 또는 총괄 관리자가 참석 가능)
- 세부심사 항목평가
 - * 신청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, 개선의 필요성, 신청기업의 적극성
 - *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(물류산업진흥재단)에서 구성 및 운영

■ 3차 현장실사

- 시공업체와 현장 방문 및 실측, 일정협의 등 진행

5

사업신청

■ 접수방법

- 재단 홈페이지 내,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 필수)
 - : 메뉴 '사업' -> 안전/환경 개선사업 -> 2026년 안전환경개선지원사업 -> 신청서 작성
 - * 필수 제출서류 작성 내용 활용하여 홈페이지 시스템 내 등록 (필수 제출서류 첨부 병행)

■ 온라인 제출서류

① 기업소개자료 내 첨부 (압축파일 형식으로 신청페이지에서 업로드)

-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, 1부 (직인必 PDF파일) *별첨1 양식 활용
- 시설물 유지동의서, 1부 (직인必 PDF파일) *별첨2 양식 활용
- 심사 자료 1부 (자유형식 PPT내 사진 상세 첨부) *신청사유 기술 및 환경개선 필요한 장소 사진 등 첨부
- (임대시설 해당 시) 임대차계약서 (필요시 계약연장동의서 제출)
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(신청페이지에서 업로드)

③ 재무제표 첨부 (압축파일 형식, 신청페이지에서 업로드)

- 재무제표(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) : '23년~'25년

※ 위 첨부서류 누락시 선정제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첨부요망.

- 문의 : 환경개선지원사업 담당자 (메일 : sjin@klip.or.kr, 전화 : 02-3279-3208)

6

제외 및 취소

■ 제외대상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법인
- 최근 3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「공정거래관련법」

- 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법인
- 「국세기본법」에 의거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의거하여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,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법인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법인

■ 취소대상

-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
- 제외 대상기업이지만, 해당사실을 속이고 지원한 경우
- 신청기업이 청탁을 목적으로 관계자 및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
-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
 - 가) 성폭력·성희롱·성추행 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경우
 - 나) 직장 내 차별·괴롭힘·따돌림 등으로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
 - 다) 부정청탁(입찰선정, 인사관리 등)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경우
 - 라) 공금횡령으로 인하여 소송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

■ 수혜내역 환수

- 시공비용 환수 및 온·오프라인 홍보내용 철회는 1개월 이내 진행한다.
- 재단은 취소대상사항으로 인하여 수혜가 취소된 기업에게 지원한 시공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기업은 수혜받은 비용을 재단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- 또한, 수혜가 취소된 기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 등에 수혜받은 사실을 철회한다.
- 재단의 환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수혜기업의 시공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 발생 시, 재단 관할법원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.
- 시설물 유지동의서 내용을 협의기간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
 - 가) 재단의 수혜사업 유지확인을 위한 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
 - 나) 사업완료 후 2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
 - 다) 사업완료 후 2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, 분실한 경우
 - 단,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2년을 산정

【붙임 1】중소물류기업 기준

-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운수 및 창고업 업태(통계분류포털)

구 분	내 용
분류명	운수 및 창고업(49~52) Transportation and storage
분류코드	H
설명	<p>개요</p> <p>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, 창고업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·일정·경로·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</p> <p>가. 운송업</p> <p>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, 도로, 관로(파이프라인),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</p> <p>나. 운송관련 서비스업</p> <p>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·보조하는 화물 취급업, 창고업, 터미널시설 운영업, 화물 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</p> <p>화물 취급 및 화물 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 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.</p>
타산업과 관계	<p>가.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산업에 분류되나,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한다.</p> <p>나. 자동차 유지 및 수리는 “95: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”에 분류하며, 철도 역사, 항구, 비행장에서 철도 차량, 선박, 항공기 운행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유지·보수 활동은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스에 분류한다. 철도,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, 재생 및 개조활동은 “31:기타 운송장비 제조업”에 분류한다.</p> <p>다. 도로, 철도, 항구, 비행장 등의 건설은 “4122:토목시설물 건설업”에 분류한다.</p> <p>라.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송장비의 종류에 따라 “761:운송장비 임대업”의 해당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.</p> <p>마. 여행관련 서비스나 여행보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“752: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”에 분류한다.</p>

• 중소기업 범위기준(중소벤처기업부)

-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-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.

구 분	내 용
규모기준	<p>가.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: 운수 및 창고업</p> <p>나. 분류부호 : H</p> <p>다. 중소기업(평균매출액) : 800억 원 이하</p> <p>라. 소기업(평균매출액) : 80억 원 이하</p> <p>마.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</p>
상한기준	<p>가.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,000억 원 미만일 것</p>
독립성 기준	<p>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</p> <p>가.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</p> <p>나. 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, 비영리법인 등 제외)이 주식 등의 30%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</p> <p>다.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</p> <p>※ 관계기업 :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·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</p> <p>※ 단,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(연합회)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</p>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물류산업진흥재단은「안전/환경 개선」사업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□ 수집·이용 목적

- 「안전/환경 개선」사업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·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.

□ 수집·이용할 항목

- 필수항목 : 개인식별정보(성명, 소속, 직위, 전화번호, 휴대전화, E-mail)

□ 보유·이용기간

- 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합니다.

□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□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?

개인정보	필수항목 : 개인식별정보 (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)
	신청인 : (인)

